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윤리

오 항녕*

1. 앞의 자동차를 보고
2. 낮설지 않은데 생소한
3. 차라리 모르는 편이
4. 알고 나면 할 수 있는
5. 다시 냉정하게
6. 책임의 기본 조건

『도덕경(道德經)』 80장에 보면, ‘다시 사람들이 끈을 묶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게 하라(使民復結繩而用之)’는 강력한 반문명(反文明)을 요구하는 듯한 노자(老子)의 주문이 나온다. 의외의 곳에서 노자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만난다. 시대와 공간을 넘는 곳에 살았던 이집트 왕(王) 타무스가 그 사람이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Phaedrus)』에 실린 이야기인데, 숫자, 계산, 기하학, 문자를 발명한 신(神) 테우스를 초청했을 때, 타무스 왕과 테우스 신이 나눈 대화를 보자.

테우스 曰 “문자(文字)를 소개하면서) 이집트인의 지혜와 기억을 높여주는 완벽한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부장

타무스曰 “문자를 깨친 사람들은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아 더 많이 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명한 것은 회상의 보증수표이지, 기억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그들은 진정한 지혜 대신 자만심으로 가득 찰 것이고 (당신의 발명은) 사회에 짐이 될 뿐입니다.”

노자나 타무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문명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기보다 득(得)인 동시에 실(失)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어쩌면 문명이란 것이 인간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이중성, 곧 때론 조화롭고 때론 모순되는 그 이중성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타무스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외화(外化)시키면서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놓친 듯하다. 물론 외화가 소외(疎外)에 이르는 순간, 타무스 생각이 나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문명을 통한 자기표현은 일단 시작되면 뒤로 물린 적이 없다.

그런데, 위의 예는 다시 문명의 한가운데에 ‘문자’라는 의사소통수단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자는 매체를 필요로 하고, 전달할 메시지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기록(Document)’을 이룬다. 필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푸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한가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이 뭔지는 좀더 두고 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이런 사실만 확인하고 싶다. 문명은 잘 다루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점. 그 복판에 ‘기록’이 있다는 점.

1. 앞의 자동차를 보고

영화 『메멘토(Memento)』를 보면, 10분이 지나면 기억을 상실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무엇을 했는지도 모두 10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주인공을 둘러싸고 조각과 진실이 교차한다. 그런데, 10분은 아니지만,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10

분 안에, 길어야 몇 년이 지나면 기억이 말소되는 경험을 가진, 쉽게 말해 저급한 기억 능력을 가진 필자의 처지에서는 심상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주인공은 10분으로 제한된 기억을 연장시키려고 자신의 신체 거의 모든 부분을 메모장으로 이용한다. 손등, 팔뚝, 배, 허벅지 등 곳곳에 필사적으로 기록작업(Documentation)을 한다. 그러나, 제한된 신체와 (시간만 있다면) 한없는 경험의 싸움은 사실 무모한 일이다. 그 틈을 비집고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관심 타인지, 그 주인공의 손등, 팔뚝, 배, 허벅지 등등에 고려시대 해인사 사고, 조선시대 충주 사고, 성주 사고, 태백산 사고, 적상산 사고, 요즘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서고 등이 겹쳐진다. 물론 이런 상상은 비극적이거나 부적절하다.

그러나, 그런 비극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거나 하는 판단보다 앞서서 것이 바로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느낌이다. 그 느낌은 『메멘토』와 『고려사(高麗史)』를 잇는 다리가 된다.

“새 도끼자루를 만들 때는 낡은 도끼자루를 본보기로 삼고, 뒷 수레는 앞 수레가 간 데를 보고 갈 곳을 바로 잡는다고 합니다.”

『고려사』 편찬을 마치고, 편찬담당관들이 국왕에게 올린 예문(禮文),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의 한 대목이다. 우리는 인간-기억-기록이라는 프레임웍이 『메멘토』와 『고려사』에서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이 점만 확인하고 가기로 한다: 기억의 중심에 기록이 있다. 단, 한 가지 더 남겨둘 질문이 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조작인가?

2. 낫설지 않은데 생소한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의 기억인 기록으로, 오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영어로는 'Archives'라고 한다. 번역어가 마땅치 않지만, 의미는 '역사적 보존 기록'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관리, 연구, 보존하는 학문 및 실무 영역을 'Archival Studies(또는 Science)'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한다. 관련 학계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선구자들이 체계적으로 이 분야를 소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이었다.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도 낫설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필자가 정부기록보존소에 근무할 때 그곳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정부기록보존소를 실록을 편찬, 보관하던 사관(史館)이나 춘추관(春秋館) 또는 사고(史庫)로, 그곳에 근무하는 우리를 사관(史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던 기억이 난다. 그 분들은 그렇게 불렀고, 그것으로 따로 엔코딩이 필요 없이 말이 통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우랄(迂闊)하게도 실록은 극복해야할 전통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 전통이 발휘하는 강력한 현재성은 인정해야할 듯하다. 물론, 그 현재성이 현재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현재화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렇듯이, 역사적 보존 기록은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담는 그릇인데, 이 집단적 기억의 의미로 중요한 것은, 많은 개인이나 조직(사회)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기록관(Archives)이나 박물관(Museums)의 활동은 서로 얽혀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운 역사적 경험 중에도, 박물관은 우리에게 낫설지 않다. 그렇게 없어졌어도 아직 박물관을 지을 만큼 우

리의 역사적 두께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참 더 발전해야하지만, 강화도를 노략하던 프랑스 장교 주베른가 하는 자가 ‘이상하게도 모든 집에 책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워낙 책과 가까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도서관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런 점에서 기록관은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은데 아직 생소하다. 말도 안되는 필자의 이 말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는 한, 유네스코 아나라 세상 없는 누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세계’에서 우리는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3. 차라리 모르는 편이

아무튼 필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아키비스트, 즉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도, ‘조선시대 사관이 하던 일’이라고 설명하면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필자의 경험이었다. 물론, 수 백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전문직으로 삼으며, ‘21세기 초에 기록전문가가 하던 일’이라고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이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혜택은 누리지 못한 듯하다. 어느 존경하는 미국 아키비스트의 경험담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키비스트의 길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친구들의 반응은 지겹고(dull) 창의적이지도 않으며(uncreative) 지적(知的)으로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of limited intellectual scope) 불결한(dirty) 일을 하려고 자신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중요한 것도 아닌 오래되고 먼지 묻은 파일을 다루는, 말하자면 ‘학자’가 할 일

이 못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차하면 사관을 들먹이는 우리 사회는 어떨까. 정년을 맞아 공직을 떠난 어느 관료는, ‘기록관리는 행정의 쓰레기 처리’라고 말했다. 문서에서 시작하여 문서에서 끝나는 공직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이나 자신의 흔적을 그 ‘쓰레기’ 없이는 증명할 길이 없다는 점도 깨닫지 못하고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말을 입에 담는 태도는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다. 허나, 이 사례는 다행히 한국 기록관리의 인식과 현실이 어디쯤인가를 명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앞의 미국 아키비스트의 사례는 이해가 가는 점이 있다. 사실 좀 지루하거나 더러울 때도 있다. 기타의 선입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실체가 잡히는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심각하다. 다들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안 한다. 그렇다면 중요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4. 알고 나면 할 수 있는

그렇게 공허하게 된 데에는 집단적 기억이 창출할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근 백년의 역사에서 주권자가 근대 시민으로써, 국민으로써 국가 경영으로부터 소외 또는 배제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다. 공공부분의 경우, 이러한 시민참여의 배제는 곧바로 집단적 기억의 자의적 조작(또는 의도적 말소)으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1998년 이른바 IMF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공공부문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단계와 상응하는 역사성을 띤 거사였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그 정착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다시 공허하다는 말로 돌아가자. 중요한데 안 할 경우에는, 못하는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제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근대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이해와 닿아 있으며, 그것은 곧 근대 기록관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갓 시작한 우리의 근대 기록관리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는 것을 전제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도 정부기록보존소가 가까스로 버텨주었을 뿐이고, 학계의 기여도는 그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역사학계만 보더라도, 과거의 기록을 논문자료로만 활용하였지, 지금의 기록이 역시 미래의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데까지 역사의식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학계와 공공부문의 현실은, 1980년 미국 동력자원부(Dept. of Energy)가 주관하고 인접 학문 학자 및 실무자들로 구성된 전담반(Human Interference Task Force)의 가동 사례와 비교하면 극명히 대비된다.¹⁾

이 전담반의 구성 목적은 방사능 폐기물 매립지역에 대한 정보를 10,000년 뒤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줄 것인가를 연구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10,000년(Ten Millennia)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위험성이 인류 생존에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면 사람들의 언어와 상징 체계가 변할 것이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10,000년 뒤의 후손들이 그 매립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물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매립지 자

1) Foote, Kenneth E,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53, 1990.

체의 관리서고(on-site vaults)와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될 기록(off-site document)에 있는 정보가 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록들을 일 만년 뒤에 읽을 수 있게 하여 만약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칫, 이 사례가 좌절감, 답답함을 주었다면 용서 바란다.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도 아닌 만년을 생각하라니. 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만년을 생각하면 살라니.

그러나, 다시 여기서 전통을 힘을 빌자. 애당초 실록의 존재의의는 당대(當代) 또는 당조(當朝)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의의를 ‘후세(後世)’에 두었다. 그 ‘후세’는 다름 아닌 왕조가 망한 뒤였다. 사실 왕조의 멸망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곧 대역(大逆)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에 관한 한 ‘후세’라는 말로 왕조 멸망 이후의 삶까지도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理想)은, 아니 장기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그들이 말했던 ‘후세’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실록이라는 전통의 진정한 힘이며, 그 저력이 우리의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5. 다시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집단 기억’으로 관심을 갖는 기록은, 정의하자면, 기관, 조직, 개인이 일을 하거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받았거나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남은 정보(recorded information)를 말한다. 매체나 형식은 상관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Record’와 ‘Document’를 함께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고,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둘 다 우리말로로는 ‘기록’인데, ‘Record’는 우리말로 ‘문서’ 쪽

에, 'Document'는 '기록 일반' 쪽에 가깝게 사용한다. 또 미국의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n.)처럼 'Archive'와 'Record'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 공공기록관(Public Record Office)처럼 둘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중국처럼 완전히 자신들의 조어로, 당안(檔案)이란 말을 쓰는 곳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징성을 보탠다면 'Archive'가 사초(史草)에 가깝고, 'Record'는 흔한 어법으로 말하면 문서에 가깝다.

문화유산의 수호자라는 점에서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이 동료일 터인데, 이중 같은 기록류를 다루는 도서관과 기록관의 소장자료가 갖는 특징을 <표>로 살펴보자.

<표 1> 도서(Libraries)과 문서(Records)의 차이²⁾

범주	도서(Libraries)	문서(Records)
성격	출판 개별 아이템 독립적 의미 다른 곳에서도 이용 가능	출판 없음 연관된 아이템 그룹 다른 아이템과 연관되어 의미를 가짐 유일성
생산자	다수의 각기 다른 개인이나 기관	모태가 되는 기관이나 조직
생산방식	분리, 독립된 활동	유기적, 자연적 업무과정
취득방법	단일 아이템을 선별 결정의 수정 반복 가능	집합적 평가 결정의 반복 불가능 (폐기는 곧 영원한 폐기)
정리	미리 정해진 주제 분류	출처주의 및 원질서 (구조 및 기능과 관련)
디스크립션	개별 아이템	집합적(기록군이나 시리즈)

2) Hunter, Gregory S, *Developing and maintaining practical Archives*, 1997.

디스크립션 매체	인쇄된 양식에 작성(제목, 페이지, 목차, 색인) 카드 목록, 온라인 공공이용시스템(OPAC)	아키비스트가 준비해야 함 편람, 인벤토리, 온라인 시스템
이 용	열린 서가 아이템이 판매 유통	닫힌 서가 아이템이 유통 판매 안됨

이런 연구, 관리 대상의 차이가 학문 및 실무 영역의 차이로 이어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지는 다음 발표에서 상론될 것이므로 생략한다. 요약하면, 보존기록 또는 '사초'(Archives)는 첫째, 조직이든, 정부든, 개인이든 그것을 생산한 실체와 연관성을 갖는다. 둘째, 보존기록은 유기성을 갖는다. 셋째, 공식적 성격을 갖는다. 넷째, 유일하다.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대상과 씨름하는 인적 자원이다. 기록학의 원칙과 기관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계속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판단하고,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기록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이관된 기록을 서가에 배치하고,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며, 그 기록이나 기록에 담긴 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아키비스트의 자격에 주목하고 조문에 넣은 것만으로도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시의성(時宜性)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런 인적 자원에 인식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을 전후하여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올해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미국 국립기록청 청장대리를 지낸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지만, 기록 관련 사계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발상이자 성과였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회적인 공감감이 필요하고, 그 공감감이 결집된 힘으로 발현할 때 발

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나, 기회는 주체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법이다.

6. 책임의 기본 조건

미국의 어느 선배 '사관'이 말했다.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배울 것도 많다.(Much to do-Much to learn) 개인이나 공사(公私) 기관, 기업 활동의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 증거를 알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아키비스트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과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내용적, 물리적으로(intellectually and physically) 자신에게 넘어온 기록을 관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그 기록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며, 두 번째 의미가 없이는 앞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공허할 뿐이다.³⁾

이런 의미에서, 이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아키비스트 전문직의 윤리 규약(Code of Ethic)을 제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윤리란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적 관계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윤리규약은 결론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고민의 범주인 셈이다.

열었던 기록을 다루면서 맺어야 하는 관계만 들어보아도, 쉽게 이 말이 납득될 것이다. 첫 번째는, 아키비스트와 그 조직으로서의 보존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아키비스트로써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이 있는 기록관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또 내가 하는 일이

3)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공감(professional identity)과 기록학 이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Livelton, Trevor, *Archival Theory, Records, and the Public*, SAA, 1996. 참고.

현재나 미래의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기록 자체에 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또 내가 하는 결정이 기록을 생산한 사람 혹은 기증한 사람에게는 누가 되지 않을지, 또 기록을 이용할 의뢰인들에게는? 또 우리 사회의 정보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된 판단은? 그리고 아키비스트와 기록 관련 전문직들과의 협력은?

이 뿐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문가의 윤리는 구체적인 문제이며, 모든 일은 늘 구체적이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문제를 확정하고,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인지 단지 업무를 하면서 내려야할 결정의 문제인지 판단하고, 관심이나 이해의 충돌인지 권리나 정당성의 문제인지 가늠해야 한다. 또 누가 이 문제를 풀 주체인지, 아키비스트 개인이 직면한 문제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인 기록관 전체가 직면한 문제인지, 아니면 기록 관련 전문직이 직면하는 문제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아가, 해결방안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관례나 문화적 습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 방안에 현재나 미래의 기록관이나 아키비스트의 어떤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지 등등.

낙수(落穗)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 2031년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 숙제를 도와준다. 선생님께서 내준 숙제는 ‘2010년 남북통일회담 조사해오기’. 통일된 이듬해 확대개편된 국립기록청 홈페이지로 가서 자연검색 - ‘통일회담’. 2019년에 폐지된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의 한 시리즈가 눈에 들어온다. 클릭! 시리즈에 있는 문서파일과 사진, 동영상 등의 아이템 목록이 뜬다. 사진과 동영상 몇 장 다운받고, 다시 시리즈로 대통령 기록군에 있는 한 시리즈가 통일회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description)하고 있다. 가보았더니, 그중 몇 파일이 비공개.

이는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현안을 포함한 문서로 30년간 비공개로 정해져 있었다. 갑자기, 손녀가 통일 당시 남북 초등학교 학생들의 덩치가 어땠는지 궁금하단다. 이 문서가 웹에서 제공할 정도로 이용되지 않는지 원본 서비스가 되지 않아, 기록청을 방문하였다. 오랜만에 온다. 열람실에 새로운 얼굴이 많다. 그중 오십이 넘는 한 아키비스트가 반가운 얼굴로 참고할 통계자료와 마이크로 필름을 알려준다. 아마 이 사람이 남한에서 처음 정부기관에 아키비스트를 임용할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해 들어왔을 것이다. 내 수업도 들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쳤다는 게 늘 마음에 걸리는 시절이었다. 마이크로필름 대출을 기다리는 동안 손녀는 함흥시립기록관을 은퇴한 뒤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를 나온다는 미모의 할머니와 말을 트고 있었다. 고마운 일이다.

- ICA 윤리규약(원칙만 수록)

1.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이 완전한 통합성을 갖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계속 과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을 그것이 가진 역사적, 법적, 행정적 맥락에서 평가, 선별, 보존하여 출처주의의 원칙을 유지하고 기록의 본래적 연관성을 명백히 해야 한다.
3.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을 가공, 보존, 열람,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원본성(authenticity)을 보호해야 한다.
4.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이 계속 활용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의 처리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장려하고, 열람 이용자에게는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아키비스트는 기록에 대한 이용권과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8. 아키비스트는 그들에게 부여된 남다른 신뢰를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위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타인의 이해에 맞추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가진 기록관리 지식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쇄신시키고 연구결과와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탁월한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10. 아키비스트는 다른 직종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 세계의 기록문화 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미국 SAA 윤리규약

규약 전문(Introduction to the Code)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공공에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 자료를 선별하고, 보존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키비스트는 정해진 법령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다. 그들은 건전한 기록관리원칙에 기초한 윤리규약에 동의하고, 이러한 윤리 및 기록관리 표준을 기관과 전문가가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수집정책(Collecting Policies)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이관을 준비하고, 그 기관의 목적과 명시된 정책 및 자원에 따라 오랜 기간의 가치를 지닌 기록 자료를 인수한다. 그들은 인수를 위한 경쟁이 기록 자료의 유기적 원본성(integrity)과 안전성에 위해가 될 때는 경쟁해서는 안되면, 기록관이 설립된 기관의 기록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보존소에 기록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기증자와의 관계 및 제한

장기적 가치를 지닌 기록 자료의 이관담당 공무원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는 아키비스트는 이관, 기증, 매매에 따른 권한을 충분히 생각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것은 곧, 재정 준비와 이윤, 저작권, 기록물 처리를 위한 계획, 이용 조건 등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의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는 제한에 찬동해서는 안되지만, 일정 기간동안 명백히 언급된 제한규정은 이관 조건으로 받

아들여야 하며, 때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제한을 제시할 수도 있다. 아키비스트는 이관이나 인수 때 작성된 모든 합의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기술(Description)

아키비스트는 검색도구나 가이드에 의하여 기록물을 기술하여 역사 기록에 대한 내부적 파악과 이용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장물을 지적(知的)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평가, 보호, 정리(Appraisal, Protection, Arrangement)

아키비스트는 그들 기관의 행정적 필요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기관 정책에 근거한 불편부당한 판단을 통하여 장기적 가치를 지닌 기록 자료를 평가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원본성(原本性, authenticity)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할로 이관된 기록이나 정보의 정리상태를 유지 보호한다. 아키비스트는, 파손, 변형, 절도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기록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관할에 있는 장기적 가치를 지닌 기록 자료의 진본성(integrity)을 보호하고, 그 증거 가치가 정리, 기술, 보존, 활용하는 기록관리 과정에서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아키비스트는 절도자를 체포나 기소할 때 다른 아키비스트 및 법집행 기관과 협력한다.

프라이버시와 제한된 정보

아키비스트는 장기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 자료를 생산하였거나 그 주체가 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특히 그 자료의 처분에 아무런 선택권을 갖지 못한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아키비스트는 접근이 제한된 소장기록을 다루면서 얻은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용과 제한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소장기록에 대한 모든 합당한 질의에 대하여 예외바르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임하며, 기관의 정책이나 소장물 보존, 법적 고려, 개인의 권리, 기증자의 동의, 역사기록자료의 신중한 이용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기록의 이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연구자 정보

아키비스트는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해당 연구자가 동의할 경우, 다른 편에 그 성명도 제공한다.

아키비스트의 연구

학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아키비스트는 연구, 출판 및 다른 학자의 저술에 대한 평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가 자신의 기관 소장기록을 개인적인 연구나 출판에 이용할 경우, 그 활동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소장기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초고를 사거나 파는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보존소와 이관문제로 다투어서는 안되며, 고용주에게 수집활동을 알려야 하고, 개인적인 이관과 판매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다른 기관에 대한 비판

아키비스트는 다른 아키비스트나 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을 삼가야 하며, 전문적 윤리적 행위에 관하여 해당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전문 기록관리기관에 비평을 할 수 있다.

전문가적 활동

아키비스트는 전문가 협회나 협력 활동을 통하여 다른 아키비스트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아직 훈련이나 교육이 미숙한 다른 이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키비스트는 전문가 윤리에 따라 바람직한 실천의 표준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고, 자신의 기관이나 컬렉션의 관리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을 추구하여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문적 표준과 실무를 발전 확산시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진다.

결 론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기관과 전문성에 최대한 기여하고, 기록관리 표준과 윤리를 지키도록 격려함으로써 어떤 갈등이라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캐나다 ACA 윤리규약

1.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의 지적(知的)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고 이들 기록에 대한 책임 있는 물리적 관리의식(custodianship)을 증진함으로써, 현재의 이용자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역사적 보존기록을 평가, 선별, 인수,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아키비스트는 자신과 동료들이 차별과 성적(性的) 또는 인간적인 괴롭힘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문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아키비스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밀 및 기록의 보존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가능한 최대 로 이용하도록 고무, 격려하여야 한다.
4. 아키비스트는 가능한 가장 높은 행동 표준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힘닿는 데까지 승인된 기록관리 원칙과 실천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완수한다.
5. 아키비스트는 개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또 그 정보와 경험을 기록관리 및 유관 전문직의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이론과 방법, 실천의 진보에 기여한다.
6. 아키비스트는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

